|  |  |  |
| --- | --- | --- |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개정에 관한 통지**  안감총청안건[2108]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국, 유관 중앙기업 :  '간정방권(簡政放權), 방관결합(放管結合),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를 실행하고 사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근로자사용업체가 안전인증을 획득한 노동방호용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를 삭제한다.  2. 제11조 제(1)호의 제2항 '업무장소의 고독성물품목록에 수록된 인체발암성물질(첨부 3 참조) 농도가 작업장노출한계치(PC-TWA或MAC)의 1/2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방호용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정확한 착용•사용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3. 제18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23조 제1항을 '노동방호용품은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첨부 3을 삭제하고 기존 첨부 4를 첨부 3으로 수정하며 기존 첨부 5를 첨부 4로 수정한다.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개정본을 재발표하는 바이며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판공청  2018년 1월 15일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관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근로자사용업체의 노동방호용품 사용 및 관리를 규율하고 근로자의 안전•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퇴치법> 등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사업기관 및 개인경제조직 등 근로자사용업체의 노동방호용품 관리는 이 규범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이 규범에서 노동방호용품이라 함은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와 직업병 위해성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사용업체가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개인방호장비를 지칭한다.  제4조 노동방호용품은 근로자사용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적•예방적 조치로 노동방호용품으로 공사방호시설 및 기타 기술•관리조치를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관리제도를 완비하여 노동방호용품 배정•지급•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사용업체는 특별경비를 마련하여 노동방호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기타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아니된다. 해당 특별경비는 생산원가에 산입하고 실제 지출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 노동방호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방호 성능이 중국의 관련 표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근로자는 작업 과정에서 규장제도와 노동방호용품 사용규칙에 따라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근로자사용업체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와 수용한 실습생은 본 업체 종업원 범위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진입하는 기타 외부인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업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방호용품의 선택  제10조 노동방호용품은 다음과 같이 10개 부류로 구분된다.  (1)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머리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머리방호용품.  (2) 무산소공기와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에 흡입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호흡방호용품.  (3)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안면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기 위한 안면방호용품.  (4) 소음 위해성 방지 및 방수•방한 등 귀방호용품.  (5)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손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손방호용품.  (6) 물리적•화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발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발방호용품.  (7)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몸통 부위의 손상을 방어하기 위한 몸통방호용품.  (8)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과 유해요인으로부터 피부 손상 또는 피부질환 발병을 방어하기 위한 피부방호용품.  (9) 고공작업 종사자의 추락 또는 고공낙하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추락방호용품.  (10) 기타 위험과 유해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노동방호용품.  제11조 근로자사용업체는 식별, 평가, 선택의 절차(첨부 1 참조)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방식 및 작업조건과 결부시켜 개인적 특성 및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방호 기능과 효과가 양호한 노동방호용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분진, 유독•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분진의 종류, 농도, 유리규산 함유량과 독성물질의 종류 및 농도에 근거하여 어울리는 호흡기(첨부 2 참조), 방호복, 방호장갑 및 방호신발을 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호흡계통 방호용품 - 분진마스크>(GB2626), <호흡계통 방호용품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GB/T18664), <방호복 - 화학 방호복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GB/T24536), <손 부위 방호 - 방호장갑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 지침>(GB/T29512) 및 <개인방호장비 - 방호신발(장화)의 선택, 사용과 유지보수 지침>(GB/T28409) 등 표준을 참조한다.  (2)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로 80dB≤LEX,8h＜85dB의 업무장소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의 수요에 근거하여 그에게 적절한 청력보호기를 배정하여야 한다. LEX,8h≥85dB의 업무장소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청력보호기를 배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착용•사용(첨부 2 참조)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력보호기 선택 지침>(GB/T23466)를 참조한다.  (3) 업무장소에 전리방사선 위해성이 존재하고 위해성 평가에서 근로자의 노동방호용품 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전리방사선 관련 표준과 <개인방호장비 배정에 관한 기본 요구>(GB/T29510)를 참조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착용•사용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비산 쇄설물, 회전기계 및 날카로운 기구 등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사용업체는 <개인방호장비 선택•사용 규범>(GB/T11651), <머리 부위 방호 - 안전모자 선택•사용 규범>(GB/T30041) 및 <추락방호장비 안전사용 규범>(GB/T23468) 등 표준을 참조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노동방호용품을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동일 업무장소에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유해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든 유형의 위해성을 방어할 수 있는 방호용품을 동시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 배정이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은 그 호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다양한 업무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과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다양한 위해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그를 위하여 선택 및 배정한 노동방호용품은 다양한 업무장소에서의 방호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3조 노동방호용품 선택 시 착용 적합성 및 기본적인 쾌적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규격•사이즈 및 양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급성 직업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유해 업무장소에 비상 대비 방호용품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근로자사용업체는 순찰검사 등 유동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휴대용 비상 대비 개인방호용품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방호용품의 구매, 지급, 교육훈련 및 사용  제15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가 업무장소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유해요인의 유형 및 위해성, 근로환경과 조건, 노동방호용품의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본 업체에 적합한 노동방호용품 배정기준(첨부 3 참조)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배정기준에 근거하여 구매계획을 제정하고 기준에 부합되는 합격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검사보고서 등 품질증명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검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본 업체가 제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노동방호용품을 지급하고 지급 등기부(첨부 4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방호용품의 사용, 유지보수 등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사용업체는 근로자에게 노동방호용품의 외관이 양호하고 구성품이 완비되었으며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사용 상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방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방호용품의 유지보수, 교체 및 폐기처분  제22조 노동방호용품은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교체함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공용 노동방호용품은 작업장 또는 작업반•작업팀이 통일적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비상 대비 노동방호용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수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방호용품의 성능과 효과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호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24조 근로자사용업체는 노동방호용품 지급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손된 노동방호용품은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모자, 호흡기, 절연장갑 등 안전성능에 대한 요구가 높고 쉽게 파손되는 노동방호용품은 유효 방호기능 최저지표와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강제적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이 규범에서 업무장소라 함은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생산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머무는 업무수행장소와 작업장을 지칭한다.  제27조 탄광의 노동방호용품 관리는 <탄광 직업안전위생 개인방호용품 배정기준>(AQ1051)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첨부 :  [1. 노동방호용품 선택 절차 (다운로드)](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1.doc)  [2. 호흡기 및 청력보호기의 선택과 사용 (다운로드)](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2.docx)  [3. 근로자사용업체 노동방호용품 배정기준 (다운로드)](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3.docx)  [4. 노동보효용품 지급 등기표 (다운로드)](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4.docx) |  | **国家安全监管总局办公厅关于修改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管理规范的通知**  安监总厅安健〔2018〕3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安全生产监督管理局，各省级煤矿安全监察局，有关中央企业：  为落实“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的要求，解决使用过程中发现的问题，现就《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管理规范》有关内容主要修改事项通知如下：  一、删除第七条第二款“鼓励用人单位购买、使用获得安全标志的劳动防护用品。”  二、删除第十一条（一）中第二款“工作场所存在高毒物品目录中的确定人类致癌物质（见附件3），当浓度达到其1/2职业接触限值（PC-TWA或MAC）时，用人单位应为劳动者配备相应的劳动防护用品，并指导劳动者正确佩戴和使用。”  三、删除第十八条，将原第二十三条第一款修改为“劳动防护用品应当按照要求妥善保存，及时更换，保证其在有效期内。”  四、删除附件3，并将原附件4改为附件3，原附件5改为附件4。  现将修改后的《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管理规范》重新发布，自印发之日起施行。  国家安全监管总局办公厅  2018年1月15日    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管理规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的使用和管理，保障劳动者安全健康及相关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等法律、行政法规和规章，制定本规范。  第二条 本规范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企业、事业单位和个体经济组织等用人单位的劳动防护用品管理工作。  第三条 本规范所称的劳动防护用品，是指由用人单位为劳动者配备的，使其在劳动过程中免遭或者减轻事故伤害及职业病危害的个体防护装备。  第四条 劳动防护用品是由用人单位提供的，保障劳动者安全与健康的辅助性、预防性措施，不得以劳动防护用品替代工程防护设施和其他技术、管理措施。  第五条 用人单位应当健全管理制度，加强劳动防护用品配备、发放、使用等管理工作。  第六条 用人单位应当安排专项经费用于配备劳动防护用品，不得以货币或者其他物品替代。该项经费计入生产成本，据实列支。  第七条 用人单位应当为劳动者提供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劳动防护用品。使用进口的劳动防护用品，其防护性能不得低于我国相关标准。  第八条 劳动者在作业过程中，应当按照规章制度和劳动防护用品使用规则，正确佩戴和使用劳动防护用品。  第九条 用人单位使用的劳务派遣工、接纳的实习学生应当纳入本单位人员统一管理，并配备相应的劳动防护用品。对处于作业地点的其他外来人员，必须按照与进行作业的劳动者相同的标准，正确佩戴和使用劳动防护用品。  第二章 劳动防护用品选择  第十条 劳动防护用品分为以下十大类：  （一）防御物理、化学和生物危险、有害因素对头部伤害的头部防护用品。  （二）防御缺氧空气和空气污染物进入呼吸道的呼吸防护用品。  （三）防御物理和化学危险、有害因素对眼面部伤害的眼面部防护用品。  （四）防噪声危害及防水、防寒等的耳部防护用品。  （五）防御物理、化学和生物危险、有害因素对手部伤害的手部防护用品。  （六）防御物理和化学危险、有害因素对足部伤害的足部防护用品。  （七）防御物理、化学和生物危险、有害因素对躯干伤害的躯干防护用品。  （八）防御物理、化学和生物危险、有害因素损伤皮肤或引起皮肤疾病的护肤用品。  （九）防止高处作业劳动者坠落或者高处落物伤害的坠落防护用品。  （十）其他防御危险、有害因素的劳动防护用品。  第十一条 用人单位应按照识别、评价、选择的程序（见附件1），结合劳动者作业方式和工作条件，并考虑其个人特点及劳动强度，选择防护功能和效果适用的劳动防护用品。  （一）接触粉尘、有毒、有害物质的劳动者应当根据不同粉尘种类、粉尘浓度及游离二氧化硅含量和毒物的种类及浓度配备相应的呼吸器（见附件2）、防护服、防护手套和防护鞋等。具体可参照《呼吸防护用品自吸过滤式防颗粒物呼吸器》（GB2626）、《呼吸防护用品的选择、使用及维护》（GB/T18664）、《防护服装化学防护服的选择、使用和维护》（GB/T24536）、《手部防护防护手套的选择、使用和维护指南》（GB/T29512）和《个体防护装备足部防护鞋（靴）的选择、使用和维护指南》（GB/T28409）等标准。  （二）接触噪声的劳动者，当暴露于80dB≤LEX,8h＜85dB的工作场所时，用人单位应当根据劳动者需求为其配备适用的护听器；当暴露于LEX,8h≥85dB的工作场所时，用人单位必须为劳动者配备适用的护听器，并指导劳动者正确佩戴和使用（见附件2）。具体可参照《护听器的选择指南》（GB/T23466）。  （三）工作场所中存在电离辐射危害的，经危害评价确认劳动者需佩戴劳动防护用品的，用人单位可参照电离辐射的相关标准及《个体防护装备配备基本要求》（GB/T29510）为劳动者配备劳动防护用品，并指导劳动者正确佩戴和使用。  （四）从事存在物体坠落、碎屑飞溅、转动机械和锋利器具等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还可参照《个体防护装备选用规范》（GB/T11651）、《头部防护安全帽选用规范》（GB/T30041）和《坠落防护装备安全使用规范》（GB/T23468）等标准，为劳动者配备适用的劳动防护用品。  第十二条 同一工作地点存在不同种类的危险、有害因素的，应当为劳动者同时提供防御各类危害的劳动防护用品。需要同时配备的劳动防护用品，还应考虑其可兼容性。  劳动者在不同地点工作，并接触不同的危险、有害因素，或接触不同的危害程度的有害因素的，为其选配的劳动防护用品应满足不同工作地点的防护需求。  第十三条 劳动防护用品的选择还应当考虑其佩戴的合适性和基本舒适性，根据个人特点和需求选择适合号型、式样。  第十四条 用人单位应当在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有毒、有害工作场所配备应急劳动防护用品，放置于现场临近位置并有醒目标识。  用人单位应当为巡检等流动性作业的劳动者配备随身携带的个人应急防护用品。  第三章 劳动防护用品采购、发放、培训及使用  第十五条 用人单位应当根据劳动者工作场所中存在的危险、有害因素种类及危害程度、劳动环境条件、劳动防护用品有效使用时间制定适合本单位的劳动防护用品配备标准（见附件3）。  第十六条 用人单位应当根据劳动防护用品配备标准制定采购计划，购买符合标准的合格产品。  第十七条 用人单位应当查验并保存劳动防护用品检验报告等质量证明文件的原件或复印件。  第十八条 用人单位应当按照本单位制定的配备标准发放劳动防护用品，并作好登记（见附件4）。  第十九条 用人单位应当对劳动者进行劳动防护用品的使用、维护等专业知识的培训。  第二十条 用人单位应当督促劳动者在使用劳动防护用品前，对劳动防护用品进行检查，确保外观完好、部件齐全、功能正常。  第二十一条 用人单位应当定期对劳动防护用品的使用情况进行检查，确保劳动者正确使用。  第四章 劳动防护用品维护、更换及报废  第二十二条 劳动防护用品应当按照要求妥善保存，及时更换，保证其在有效期内。  公用的劳动防护用品应当由车间或班组统一保管，定期维护。  第二十三条 用人单位应当对应急劳动防护用品进行经常性的维护、检修，定期检测劳动防护用品的性能和效果，保证其完好有效。  第二十四条 用人单位应当按照劳动防护用品发放周期定期发放，对工作过程中损坏的，用人单位应及时更换。  第二十五条 安全帽、呼吸器、绝缘手套等安全性能要求高、易损耗的劳动防护用品，应当按照有效防护功能最低指标和有效使用期，到期强制报废。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六条 本规范所称的工作地点，是指劳动者从事职业活动或进行生产管理而经常或定时停留的岗位和作业地点。  第二十七条 煤矿劳动防护用品的管理，按照《煤矿职业安全卫生个体防护用品配备标准》（AQ1051）规定执行。  附件:  [1 劳动防护用品选择程序（下载）](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1.doc)  [2 呼吸器和护听器的选用（下载）](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2.docx)  [3 用人单位劳动防护用品配备标准](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3.docx)（下载）  [4 劳动防护用品发放登记表](http://www.chinasafety.gov.cn/newpage/newfiles/20180119fujian4.docx)（下载） |